

학생지도위원회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생회운영규정 및 학생상벌규정에 의한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대학교 학생지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생회 관련 규정 제·개정 심의
2. 학생회 관련 주요 사항 심의
3. 학생상벌규정을 시행할 때 필요한 사항
4. 기타 학생지도에 관하여 총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, 각 학부장과 학과장 및 총장이 위촉하는 전임교수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학생취업지원처장이 된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학생상벌에 있어서는 그 상벌대상자와 관계되는 교수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.

제7조(서기) 위원회는 위원 중 1인을 서기로 둔다.

제8조(시행)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총장이 특별히 지정한 사항 이외에는 교내지정 게시판에 공고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9조(기록) 위원회의 회무집행상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.

1. 회의록
2. 학생포상대장
3. 학생징계대장
4. 기타 이와 관계되는 문서철

제10조(서면의결) 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이 교육상 부적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의결로서 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.

② 서면의결에는 학생상벌규정에 명문화된 사항에 한하여 위원장과 당해 학생의 지도교수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.

제11조(사무) 위원회의 사무는 학생취업지원처에서 담당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